

[] 폐업 [] 휴업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고인	법인명(상호)	허가·승인· 등록·신고번호 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	
	소재지 (주된 사무소) ^{주1)}		
	사업의 종류		

주1)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별도의 주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실 또는 법인 대표주소를 기재

휴업	휴업 예정일	사업재개 예정일
	수신계약자 수 (유료방송의 경우)	
	휴업사유	

폐업	폐업사유	
	폐업 예정일	수신계약자 수 (유료방송의 경우)

「방송법」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5조제1항·제2항에

따라 위와 같이 [] 폐업 [] 휴업 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중

신고인 제출서류	1. 허가서, 승인장, 등록증 또는 신고증 2. 폐업(휴업)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폐업(휴업)계획서 1부.(지상파방송사업자,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,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합니다) 3. 휴업 시 역무제공계획서(유료방송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만 해당합니다) 1부. 4. 휴업 시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1부.(유료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